

국회에서 의결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9년 11월 26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연

국 무 위 원
행정안전부 진 영
장 관
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
●법률 제16648호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 중 “200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,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9년 11월 26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연

국 무 위 원
행정안전부 진 영
장 관
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
●법률 제16649호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”를 “하도급대금의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1호 중 “설계변경”을 “설계변경,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2의 제목 중 “변동에”를 “등의 변동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
2.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납품시기 등이 지연되어 관리비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로 인한 비용부담을 수급사업자가 모두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하고, 수급사업자는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9년 11월 26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연

국 무 위 원
행정안전부 장 진 영
(금융위원회 소관)

●법률 제16650호

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, 금융거래의 투명성·효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